

해양환경 측정·분석능력 인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 기간	90일
신청인	상호(사업장 명칭) 또는 법인명	법인등록번호		
	대표자(성명)	사업자등록번호		
	법인 주소	법인 전화번호		
	사업장 소재지	사업장 전화번호		
신청 내용	신청분야			

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·분석능력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신청인 제출서류	1. 측정·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. 측정·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. 측정·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, 인력 및 실험실이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